

수소 염화 불화탄소 소비관리규정의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일반설명

수소 염화 불화탄소 소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2003년 1월 15일에 최초로 반포 및 시행되어 다섯 번 개정되었으며 최근의 개정은 2019년 2월 18일의 것이었다. 현행 개정규정은 몬트리올 프로토콜 및 그것과 연계된 결정에 대한 최근의 관리요건에 맞추어 제안된 것으로서 2030년 1월 1일까지 HCFC 소비를 제로로 감소시키고자 한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그 개정규정은 HCFC가 들어간 제품이나 설비를 명확히 규제하는 것,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따른 소비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된 용도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제정하는 것, 배정관련 업무를 단순화하는 것 및 판매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부정하게 수입된 HCFC 또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의 처분에 대한 조항을 도입해서 타 이완의 HCFC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제목도 "수소 염화 불화탄소 관리규정" 으로 수정되었다. 개정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1.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에 대한 정의의 추가 및 HCFCs와 소비수량에 대한 정의의 수정. (개정된 제2조)
2. 이미 달성된 특정의 일정을 반영하기 위한 HCFC의 소비 및 생산 수량과 관리대상 HCFC 용도에 대한 관리일정의 조정 (개정된 제3, 4 및 6조)
3. 실제 할당수요 충족을 위한 현행 할당시스템의 연간 단일할당절차로의 단순화
4. 몬트리올 프로토콜 결의에 따라 허용된 면제대상 용도로서 소비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청절차 추가
5. 면제대상 용도의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수입 및 보고요건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된 제11조와 제14조)
6. 사전승인 없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에 대한 기존의 수입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
7. 부정하게 수입된 HCFC 또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에 대해 판매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 처분을 허용하는 조항 추가 (개정된 제20조)

수소 염화 불화탄소 소비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안 초안 비교표

개정된 조항	원래의 조항	설명
수소 염화 불화탄소에 대한 관리규정	수소 염화 불화탄소 소비에 대한 관리규정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통제와 관리, 즉 소비수량만이 아니라 용도제한, 회수 및 재생 요건도 포함한 HCFC에 적용된다. 따라서 규정의 표제는 그러한 보다 광범위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1조 이 규정은 공기오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2항에 따라 제정된다.	제1조 이 규정은 공기오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2항에 따라 제정된다.	이 조는 개정되지 않는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수소 염화 불화탄소(HCFCs)는 몬트리올 프로토콜 부록 C, 그룹 1에 등재되고 중앙 관할당국이 발표한 관리대상물질로서 그 순수한, 복구된, 재활용된, 또는 재생된 형태의 복합체나 혼합체를 포함하는 것을 지칭한다. 2. <u>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는 앞선 항에서 정의된 HCFC가 함유된 물품, 부속품 및 시스템을 지칭한다.</u> 3. 생산은 <u>HCFCs의 국내생산 수량에서</u> 도출되는 순-수량에서 공정 중에 회수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수량과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의해 승인된 기술에 의해 폐기되는 수량을 감한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회수되어 재사용되는 수량은 생산수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수소 염화 불화탄소(HCFCs)는 몬트리올 프로토콜 부록 C, 그룹 1에 등재되고 중앙 관할당국이 발표한 관리대상물질로서 그 순수한, 복구된, 재활용된, 또는 재생된 형태의 복합체나 혼합체를 포함하는 것을 지칭하며, <u>이 정의는 운송이나 보관에 사용된 용기 외에는 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는 제외한다.</u> 2. 생산은 국내생산수량에서 도출되는 순-수량에서 공정 중에 회수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수량과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의해 승인되는 기술에 의해 폐기되는 수량을 감한 것을 지칭한다. 3. 소비는 생산과 수입을 합해서 도출되는 순 수량에서	1. HCFCs는 복합체나 혼합체를 포함한, 순수한, 복구된, 또는 재활용된 형태의 화학물질을 지칭한다. 타이완은 HCFCs 화학물질과 HCFCs가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 모두를 규제한다. 규제범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1호 상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HCFC-함유 제품이나 장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2호가 추가되었다. 2. 제2호는 3호로 다른 번호가 부여되었고, 생산수량 규정은 목표물로 HCFCs를 명시하게 되었다. 3. 3호는 그 번호가 4호로 바뀌었고 소비수량 규정은 HCFC를 명시하게 되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당사자 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면제대상 용도(예를 들어 원자재, 재활용/재사용, 또는 폐기용)에 대한 수량을 소비수

<p>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p> <p>4. 소비는 HCFCs 생산과 수입을 합해서 도출되는 순-수량에서 수출을 감한 것을 지칭한다. <u>이는 그전부가 다른 화학물질 제조에 원료로 사용된 수량, 재활용이나 재사용된 수량, 폐기된 수량,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따라 승인된 면제대상 목적의 수량은 제외한다.</u></p> <p>5. 오존층 파괴가능 미터-톤 (이하 ODP 미터-톤이라 함)은 미터-톤으로 측정된 HCFCs를 몬트리올 프로토콜의 부록 C 그룹 1에 기재된 그 각 ODP 값과 곱한 수치를 지칭한다.</p> <p>6. 사용자는 제품제조나 유지 보수 이행에 HCFCs를 사용하는 개체를 지칭한다.</p> <p>7. 공급자는 HCFC를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이를 이용자 기업이나 판매점에 공급하는 개체를 지칭한다.</p> <p>8. 이행기록은 사용수량에 대해 사용자기업이 제공하거나 수입통관, 판매, 제조실적 및 재고 물량에 대해 공급자기업이 제공하는 문서화된 데이터로서 관련문서에 의해 입증되고 중앙관할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을 지칭한다.</p> <p>9. 회수는 기계류, 설비, 또는 용기에서 HCFC를 채집해서 보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p> <p>10. 재사용은 여과나 건조와 같은 기본 정제과정 후 회</p>	<p>수출을 감한 것을 지칭한다.</p> <p>4. 오존층 파괴가능 미터-톤 (이하 ODP 미터-톤이라 함)은 미터-톤으로 측정된 HCFCs를 몬트리올 프로토콜의 부록 C 그룹 1에 기재된 그 각 ODP 값과 곱한 수치를 지칭한다.</p> <p>5. 사용자는 제품제조나 유지 보수 이행에 HCFCs를 사용하는 개체를 지칭한다.</p> <p>6. 공급자는 HCFC를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이를 이용자 기업이나 판매점에 공급하는 개체를 지칭한다.</p> <p>7. 이행기록은 사용수량에 대해 사용자기업이 제공하거나 수입통관이나 제조실적에 대해 공급자기업이 제공하는 문서화된 데이터로서 관련문서에 의해 입증되고 중앙관할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을 지칭한다.</p> <p>8. 회수는 기계류, 설비, 또는 용기에서 HCFC를 채집해서 보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p> <p>9. 재사용은 여과나 건조와 같은 기본 정제과정 후 회</p>	<p>량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p> <p>4. 7호는 8호로 번호가 바뀌었다. 실제수요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량할당이 되게 하기 위해 이행실적 계산을 수정해서 공급자기업의 판매수량과 공급자와 사용자기업의 재고수준이 명확히 포함되게 하였다.</p> <p>5. 4에서 6호와 8에서 9호는 5에서 7호와 9에서 10호로 번호가 바뀌었고 그 내용상 다른 변동은 없다.</p>
---	--	---

<p>수된 HCFC를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p>		
<p>제3조 HCFCs의 국가기준선 소비수준은 638.156 OTP 미터-톤으로 설정된다. HCFCs 소비감축일정과 해당 연간한도는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비는 기준선의 0.5%, 즉 3.191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고, 냉장고나 에어컨 장비의 서비스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소비수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p>제3조 HCFCs의 국가기준선 소비수준은 638.156 OTP 미터-톤으로 설정된다. HCFCs 소비감축일정과 해당 연간한도는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비는 기준선의 65%, 즉 414.801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u> <u>2010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비는 기준선의 25%, 즉 159.539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u> <u>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비는 기준선의 10%, 즉 63.816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u>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비는 기준선의 0.5%, 즉 3.191 ODP 미터-톤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냉장고나 에어컨 장비의 서비스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소비수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p>제1항 1호에서 3호 상의 감축일정은 달성된 바 있고, 따라서 그 항들은 삭제되고 그 뒤의 항 들에는 그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p>
<p>제4조. HCFCs의 국가기준선 생산수준은 638.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된다. HCFCs의 생산감축일정과 해당 연간한도는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생산은 기준선의 0.5%, 즉 3.191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고, 냉장고나 에어컨 	<p>제4조 HCFCs의 국가기준선 생산수준은 638.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된다. HCFCs의 생산감축일정과 해당 연간한도는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생산은 <u>앞선 호에 명시된 국가기준선 생산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u> 	<p>제1항 1호에서 3호의 감축일정은 달성된 바 있고, 따라서 그 항들은 삭제되고 그 뒤의 항 들에는 그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p>

<p>컨 설비의 서비스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p> <p>2.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생산수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p> <p>HCFCs를 제조하는 공급자 기업은 1월과 7월 말까지 각각 중앙관할당국에 그 해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생산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 생산계획에는 제조수량, 다른 화학물질로의 전환용으로 공급되는 수량 및 수출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u>2010년 1월 1일부터 연간생산은 기준선의 25%, 즉 159.539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u></p> <p>3. <u>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생산은 기준선의 10%, 즉 63.816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u></p> <p>4.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생산은 기준선의 0.5%, 즉 3.191 ODP 미터-톤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냉장고나 에어컨 장비의 서비스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p> <p>5.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생산수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p> <p>HCFCs를 제조하는 공급자 기업은 1월과 7월 말까지 각각 중앙관할당국에 그 해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생산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 생산계획에는 제조수량, 다른 화학물질로의 전환용으로 공급되는 수량 및 수출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5조.</p> <p>HCFCs는 사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HCFCs의 수출입은 몬트리올 프로토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중앙관할당국이 발표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p>	<p>제5조.</p> <p>HCFCs는 사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HCFCs의 수출입은 몬트리올 프로토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중앙관할당국이 발표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p>	<p>이 조는 수정되지 않는다.</p>
<p>제6조.</p> <p>HCFCs의 관리대상용도와 관리일정은 아래와 같다:</p> <p>1. 2016년 1월 1일부터 <u>발포제로의 HCFCs 이용이 금지된</u></p>	<p>제6조.</p> <p>HCFCs의 관리대상용도와 관리일정은 아래와 같다:</p> <p>1. 발포제로의 HCFCs 이용: (1) 2011년 1월 1일부터 폴리</p>	<p>1. 제1항 1에서 3호 상의 관리일정은 이미 달성된 바 있고, 따라서 문구만 사소하게 수정되었다.</p> <p>2. 제1항의 개정예 맞도록 제2</p>

<p>다.</p> <p>2. 2020년 1월 1일부터 <u>용해제로의 HCFCs 이용(제조공정과 세척작업 포함)</u>이 금지된다.</p> <p>3. 2020년 1월 1일부터 <u>새로 제조된 설비나 새로 축조된 시설에 대한 냉매충전 용</u>의 HCFCs 이용이 금지된다.</p> <p>2010년 1월 1일부터 <u>에어로졸 추진제로의 HCFCs 이용(제조공정과 세척작업 포함)</u>이 금지된다.</p> <p>중양관할당국은 앞선 항에 명시된 관리일정에 따라 관리대상용도를 위한 사용자기업에 대한 할당쿼터 발급을 중지해야 한다.</p>	<p>우레탄(PU) 제조상의 HCFC-141b 사용이 금지된다.</p> <p>(2) 2015년 1월 1일부터 <u>발포제로의 HCFCs 이용에 대한 쿼터 할당</u>이 중지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그러한 목적의 HCFCs 이용이 금지된다</p> <p>2. 용해제로의 HCFCs 이용(제조공정과 세척작업 포함)</p> <p>(1) 2011년 1월 1일부터 <u>HCFC-141b 사용</u>이 금지된다.</p> <p>(2) 2020년 1월 1일부터 <u>용해제로의 HCFCs 이용(제조공정과 세척작업 포함)</u>이 금지된다.</p> <p>3. 냉매로의 HCFCs 이용:</p> <p>(1) 2011년 1월 1일부터 <u>새로 제조되는 7.1Kw 미만 냉각용량의 원도형 에어컨(분리형 포함) 상의 HCFC-22 이용</u>이 금지된다.</p> <p>(2) 2015년 1월 1일부로 <u>새로 제조되는 냉장장비나 에어컨 또는 새로 건조되는 시설용의 냉매용도인 HCFC-22 쿼터할당</u>을 중지한다. 2016년 1월 1일 부로 그러한 이용이 금지된다.</p> <p>(3) 2020년 1월 1일부로 <u>새로 제조되는 냉장장비나 에어컨 또는 새로 축조되는 시설내 냉매로의 HCFC 이용</u>이 금지된다.</p> <p>4. 2010년 1월 1일 부로 <u>스프레이 추진제로의 HCFC 이용</u>이 금지된다.</p> <p><u>제1항 1-(2)호와 3-(2)호에 기</u></p>	<p>항의 문구만 사소하게 수정되었다.</p>
--	--	---------------------------

	<p>재된 조항에 추가해서, 중앙관할당국은 앞선 항에 명시된 관리일정에 따라 관리대상 용도에 대한 사용자기업에 대한 쿼터할당을 중지해야 한다.</p>	
<p>제7조. 2014년 10월 23일부터 신규 HCFCs 사용자기업은 매년 7월 말까지 할당자격신청 용의 아래 문서를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서류 사본. 수입업체는 수입/수출 자격문서의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2. 공장등록서류 사본. 냉장이나 에어컨 사업체는 냉장 및 에어컨업계 등록증서 사본과 냉장 및 에어컨 엔지니어링산업협회 회원 증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3. 이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이행실적기록 또는 확인가능한 다른 실적서류. 4. 중앙관할당국이 명시하는 다른 문서. <p>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이 명시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된다.</p> <p>할당자격을 부여 받은 후 그의 회사나 공장 명칭, 주소, 또는 책임자를 변경한</p>	<p>제7조. 2014년 10월 23일부터 신규 HCFCs 사용자기업은 매년 7월 말까지 할당자격신청 용의 아래 문서를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서류 사본. 수입업체는 수입/수출 자격문서의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2. 공장등록서류 사본. 냉장이나 에어컨 사업체는 냉장 및 에어컨업계 등록증서 사본과 냉장 및 에어컨 엔지니어링산업협회 회원 증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3. 이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이행실적기록 또는 확인가능한 다른 실적서류. 4. 중앙관할당국이 명시하는 다른 문서. <p>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이 명시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된다.</p> <p>할당자격을 부여 받은 후 그의 회사나 공장 명칭, 주소, 또는 책임자를 변경한</p>	<p>조항의 번호만 변경되었고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기업은 첫 항의 1과 2호에 기재된 개정된 문서를 기록 관리용으로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하되, 할당자격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p> <p>2년간 계속해서 이행실적이 제로인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이 그의 할당자격을 취소한다. 할당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첫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p>	<p>기업은 첫 항의 1과 2호에 기재된 개정된 문서를 기록 관리용으로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하되, 할당자격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p> <p>2년간 계속해서 이행실적이 제로인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이 그의 할당자격을 취소한다. 할당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첫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p>	
<p>제8조 중앙관할당국은 국가 기간시설, 국방, 군사 또는 긴급대응 수요에 대비해서 연간 10%의 HCFCs 소비상한을 유보할 수 있다.</p> <p>앞선 항에 기재된 유보량을 공제한 후의 연간소비량이 그 해에 대한 총 할당수량이 된다. 이는 먼저 할당자격이 있는 사용자기업에 할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들의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할당자격이 있는 공급자기업에 할당되어야 한다.</p> <p>새로 할당자격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국가 HCFCs 소비 할당 후의 나머지가 그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p>	<p>제8조 중앙관할당국은 국가 기간시설, 국방, 군사 또는 긴급대응 수요에 대비해서 연간 10%의 HCFCs 소비상한을 유보할 수 있다.</p> <p>앞선 항에 기재된 유보량을 공제한 후의 연간소비량이 그 해에 대한 총 할당수량이 된다. 이는 먼저 할당자격이 있는 사용자기업에 할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들의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할당자격이 있는 공급자기업에 할당되어야 한다.</p> <p>새로 할당자격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국가 HCFCs 소비 할당 후의 나머지가 그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p>	<p>조항의 번호만 변경되었고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9조 중앙관할당국은 매년 10월 말까지 할당대상기업에 대한 그다음 해의 HCFCs 연간할당량을 승인해야 한다.</p>	<p>제10조 중앙관할당국은 매년 10월 말까지 할당대상기업에 대한 그다음 해의 HCFCs 예비 <u>연간할당량과 상반기</u> 할당량을 승인해야 한다.</p>	<p>1.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실제 할당수요를 충족하고 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해, 할당시스템이 제1항에 대한 개정안에 반영된 것처럼 행정효율성을 위해 매년 한번</p>

<p>앞선 항에 명시된 연간할당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할당자격을 가진 기업에 대해: 그 전해의 하반기 이행실적과 그 해의 전반기 이행실적의 합계로서 그 기업의 2024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 새로 할당자격을 신청한 기업: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이행실적 곱하기 2. <p><u>추가할당량에 대한 계산기준은 그 전해의 확인가능한 회수-량이어야 한다. 중앙관할당국은 연간 국가소비할당 후의 잔량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할당을 할 수 있다.</u></p>	<p>앞선 항에 명시된 <u>예비</u> 연간 할당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당자격이 있는 기업에 대해: 그해 상반기의 실제 이행수량과 그해 하반기의 할당수량의 합계. 새로 할당자격을 신청한 기업: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이행실적 곱하기 2. 	<p>행해지도록 수정되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당수량 계산을 전해 하반기의 이행실적과 그해 상반기 이행실적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2항 1호가 수정되었다. 2030년까지 HCFCs 소비와 할당수량이 제로로 감축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2024년에 대한 할당수량은 그 상한으로 설정되었다. 제3항이 현행 제11조 3항에서 재배치되었다.
	<p>제11조 (삭제됨)</p> <p>중앙관할당국은 할당자격이 부여된 기업에 대해 매년 4월 말까지 HCFCs의 연간 실제할당량, 추가할당량 및 하반기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p> <p>앞선 항에서 지칭한 연간 실제할당량의 계산기준은 그 기업의 그 전 해의 이행기록 합계여야 한다.</p> <p>추가할당량에 대한 계산기준은 그 전해의 확인가능한 회수-량이어야 한다. 중앙관할당국은 연간 국가소비 할당 후의 잔량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할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는 삭제되었다. 제10조의 수정에 맞추어, 현행 격년할당시스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폐지된다. 제3항은 개정된 제9조의 3항으로 재배치되었다.

<p><u>제10조</u> <u>앞선 조의 규정에 추가해서,</u> <u>몬트리올 프로토콜의 결의를</u> <u>통해 승인된 면제대상 용도의</u> <u>HCFCs 수입을 위해 공급자기</u> <u>업이나 사용자기업은 매년 1</u> <u>월과 7월까지 아래 자료와 서</u> <u>류를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u> <u>서 면제대상용도 수입에 대한</u> <u>심사를 신청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청서 양식.</u> 2. <u>정부 관할당국이 승인하고</u> <u>등록한 설립증명서.</u> 3. <u>HCFCs의 의도된 용도에 대</u> <u>한 진술서</u> 4. <u>HCFCs가 대체 불가능한 사</u> <u>유에 대한 설명</u> 5. <u>요구수량에 대한 진술서와</u> <u>입증문서</u> 6. <u>중앙관할당국이 정한 기타</u> <u>서류</u> <p><u>중앙관할당국은 매년 4월과</u> <u>10월 말까지 신청기업의 면</u> <u>제대상용도 수입수량을 승</u> <u>인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는 새로 추가되었다. 2. 몬트리올 프로토콜 결의를 통해 소비량계산에서 면제대상 용도를 위한 HCFCs 를 배제한 제2조 4호상의 추가에 맞추어, 이 조는 승인일정과 함께 제9조의 할당시스템과 별도로 면제대상 용도를 위한 HCFCs 수입에 대한 신청과 심사절차를 규정했다.
<p>제11조. 할당 쿼터나 앞선 조에 명시된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를 가진 기업은 사용자기업 자신이나 대행수입기업을 통해 HCFCs 할당서류나 중앙관할당국이 발부하는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서 중앙관할당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물품은 허가된 기간 내에 수입되어야 한다.</p>	<p>제12조 할당 쿼터를 가진 기업은 사용자기업 자신이나 대행수입기업을 통해 중앙관할당국의 HCFCs 할당서류를 제출해서 중앙관할당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물품은 허가된 기간 내에 수입되어야 한다.</p> <p>할당 쿼터를 가진 기업은 HCFCs 생산을 위해 사용자기업 자신이나 대행수입기업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의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제10조의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에 대한 새로운 조항에 맞게 제10조 1항과 3항이 사소한 문구수정을 통해 개정되었다.

<p>할당 쿼터를 가진 기업은 HCFCs 생산을 위해 사용자기업 자신이나 대행수입기업을 통해 중앙관할당국이 발행한 HCFCs 할당서류를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허가된 기간 내에 회수되어야 한다.</p> <p>앞선 두 항이 지칭하는 물품이 그 할당기간 내에 수입, 통관 또는 국내취소가 되지 않고 그 기간 말 전에 연장신청서가 중앙관할당국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할당쿼터, 또는 면제된 용도 용으로 승인된 수입수량은 중앙관할당국에 의해 취소된다.</p>	<p>통해 중앙관할당국이 발행한 HCFCs 할당서류를 중앙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허가된 기간 내에 회수되어야 한다.</p> <p>앞선 두 항이 지칭하는 물품이 그 할당기간 내에 수입, 통관 또는 국내취소가 되지 않고 그 기간 말 전에 연장신청서가 중앙관할당국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할당쿼터는 중앙관할당국에 의해 취소된다.</p>	
<p>제12조 사용자기업은 할당된 수량으로 재판매나 유통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앙관할당국이 그의 할당자격을 박탈한다.</p> <p>공급자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 할당된 수량을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양도가 있으면 중앙관할당국이 그 기업의 실제 연간할당량에서 양도수량의 두 배를 감축하거나 그 기업의 할당자격을 박탈한다.</p>	<p>제13조 사용자기업은 할당된 수량으로 재판매나 유통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앙관할당국이 그의 할당자격을 박탈한다.</p> <p>공급자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 할당된 수량을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양도가 있으면 중앙관할당국이 그 기업의 실제 연간할당량에서 양도수량의 두 배를 감축하거나 그 기업의 할당자격을 박탈한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13조 할당량을 가진 기업으로서 그 명칭이나 물품수량이 변경된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에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제13조 할당량을 가진 기업으로서 그 명칭이나 물품수량이 변경된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에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15조 (삭제됨)</p>	<p>이 조는 삭제되었다.</p>

<p>제14조 할당수량을 가진 사용자기업은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말까지 중앙관할당국에 종전 분기에 대한 HCFCs 물품명과 구매한 수량, 사용수량, 사용내역, 재고수준, 기타 중앙관할당국이 요구한 데이터를 확인가능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p> <p>할당수량을 가진 공급자기업은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말까지 중앙관할당국에 종전 분기에 대한 HCFCs 물품명과 수입되거나 제조된 수량, 판매수량, 재고수준, 기타 중앙관할당국이 요구한 데이터를 확인가능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p> <p>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그 분기에 대한 이행실적이 제로인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p> <p><u>제10조에 따라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은 매년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관할당국에 종전반기에 대한 수입되거나 사용된 HCFCs 물품명과 수량, HCFCs 사용 제품정보, 또는 HCFCs 판매수량, 조달수량, 재고수준, 배출량, 기타 중앙관할당국이 요구한 데이터를 확인가능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u></p> <p>보고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기업</p>	<p>제16조 할당수량을 가진 사용자기업은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말까지 중앙관할당국에 종전 분기에 대한 HCFCs 물품명과 구매한 수량, 사용수량, 사용내역, 재고수준, 기타 중앙관할당국이 요구한 데이터를 확인가능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p> <p>할당수량을 가진 공급자기업은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말까지 중앙관할당국에 종전 분기에 대한 HCFCs 물품명과 수입되거나 제조된 수량, 판매수량, 재고수준, 기타 중앙관할당국이 요구한 데이터를 확인가능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p> <p>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그 분기에 대한 이행실적이 제로인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p> <p>보고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기업은 중앙관할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보고불이행으로 간주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제10조의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에 대한 새로운 조항에 맞추어 제4항이 새로 추가되어 기업에게 매년 1월과 7월의 면제대상용도 수입허가수량 이용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
--	---	--

<p>은 중앙관할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보고불이행으로 간주된다.</p>		
<p>제15조 앞선 조의 제2항에 명시된 바 HCFCs 이행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에 추가해서, 공급자기업은 자신의 판매점리스트, 그들의 기본정보, 매출목표인 용도의 내역 및 해당매출품목의 명칭과 수량을 중앙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한다.</p> <p>공급자기업과 앞선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고된 그의 판매점은 HCFCs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p> <p>앞선 항에 명시된 판매활동은 기록되어 5년간 조회용으로 보관되어야 한다.</p>	<p>제17조 앞선 조의 제2항에 명시된 바 HCFCs 이행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에 추가해서, 공급자기업은 자신의 판매점리스트, 그들의 기본정보, 매출목표인 용도의 내역 및 해당매출품목의 명칭과 수량을 중앙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한다.</p> <p>공급자기업과 앞선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고된 그의 판매점은 HCFCs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p> <p>앞선 항에 명시된 판매활동은 기록되어 5년간 조회용으로 보관되어야 한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16조 중앙관할당국은 할당자격 신청서와 이행실적보고서의 완결성과 내용을 심사해서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p> <p>중앙관할당국은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할 수 있고 심사를 보조할 전문가와 학자를 임명할 수 있다.</p>	<p>제18조 중앙관할당국은 할당자격 신청서와 이행실적보고서의 완결성과 내용을 심사해서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p> <p>중앙관할당국은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할 수 있고 심사를 보조할 전문가와 학자를 임명할 수 있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19조 (삭제됨)</p>	<p>이 조는 삭제되었다.</p>
<p>제17조 냉매로 사용되는 HCFCs의 충전, 해체, 또는 개조에는 복구나 재생용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의 복구작업공간이</p>	<p>제20조 냉매로 사용되는 HCFCs의 충전, 해체, 또는 개조에는 복구나 재생용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의 복구작업공간이</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복구장비를 수용할 수 없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p> <p>앞선 항에 명시된 복구나 재생 장비는 아래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구장비는 냉매 추출 후의 그 장비나 시스템의 압력을 102 mmHg(수은 밀리미터)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재생장비는 복구장비의 기능을 해야 하고, 냉매 내의 습기, 윤활유, 및 공기와 같은 불순물을 각각 20ppm(중량 기준 백만 분의 일), 0.01%(부피 기준) 및 1.5% (부피 기준) 아래로 농축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p>복구장비를 수용할 수 없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p> <p>앞선 항에 명시된 복구나 재생 장비는 아래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구장비는 냉매 추출 후의 그 장비나 시스템의 압력을 102 mmHg(수은 밀리미터)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재생장비는 복구장비의 기능을 해야 하고, 냉매 내의 습기, 윤활유, 및 공기와 같은 불순물을 각각 20ppm(중량 기준 백만 분의 일), 0.01%(부피 기준) 및 1.5% (부피 기준) 아래로 농축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p>제18조</p> <p>복구장비나 재생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 충전 전에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누출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누출이 발견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2. 복구 용기에는 들어 있는 냉매의 종류가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3. 복구장비나 재생장비에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나 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 <p>앞선 항에 명시된 작업은 기록되어 5년간 조회용으로 보관되어야 한다.</p>	<p>제21조</p> <p>복구장비나 재생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 충전 전에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누출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누출이 발견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2. 복구 용기에는 들어 있는 냉매의 종류가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3. 복구장비나 재생장비에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나 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 <p>앞선 항에 명시된 작업은 기록되어 5년간 조회용으로 보관되어야 한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19조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는 사전승인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의 수출과 수입은 몬트리올 프로토콜의 규정을 준수하는 곳으로서 중앙관할당국이 발표하는 국가나 지역 만에 한한다.</p>	<p>제7조 앞에 언급된 할당정지일자부터 시작해서, 제조공정에서 앞에 언급된 관리대상 HCFC를 사용하거나 그것이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는 사전승인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수입판단은 제품이 선상에 선적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의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승인 없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의 수입에 대한 기존의 금지를 설명하기 위해, 또한 현행 제6조에 따른 HCFCs의 관리대상 용도에 대한 할당이 중지 및 금지되었으므로, 제1항이 개정되고 관련문구가 삭제되었다. 3. 물품에 대한 현행 운송방법이 해상운송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제2항은 삭제되었다. 4.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의 수출입을 위한 국가나 지역이 제5조 2항에 따른 HCFC에 대한 것과 동일함을 명시하는 제2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p>제20조 이 규정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되는 HCFC 또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에 대해, 아직 통관되지 않은 것은 세관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송되어야 한다.</p> <p><u>앞선 항에 명시된 HCFCs 또는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로서 수입규정을 위반해서 몰수된 것은 회수, 재생, 임시보관, 매각, 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u></p> <p><u>앞선 항에 명시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규정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u></p>	<p>제22조 이 규정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된 HCFCs는 세관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송되어야 한다.</p> <p>제23조 몰수된 HCFCs에 대해, <u>중앙관할당국은 HCFCs의 회수, 정제 재활용, 임시보관 및 폐기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개체를 지정하거나 그에게 위탁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 염화 불화탄소에 대한 관리규정 제17조와 관련하여, 제1항은 현행 제22조에서 재배치 및 개정되었고, 제2항은 현행 제23조에서 재배치 및 개정되었다. 2. 세관법에 따른 반송절차가 통관 전의 물품에 적용되므로, 제1항은 HCFC-함유 제품이나 설비를 포함하도록 개정 및 확대되었다. 3. 제2항은 몰수된 물품에 대한 매각 기타 적절한 처분방법이 포함되도록 사소한 문구 수정과 함께 개정되었다. 4. 제3항이 신설되어 위반행위자의 처분비용 부담의무를 명시했다.

되어야 한다.		
<p>제21조 제6조 1항 위반행위자는 법 제68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앙관할당국은 그들의 할당수량을 감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중앙관할당국은 그들의 할당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그들의 할당자격신청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p>	<p>제24조 제6조 1항 위반행위자는 법 제68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앙관할당국은 그들의 할당수량을 감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중앙관할당국은 그들의 할당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그들의 할당자격신청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22조 이 규정에 명시된 관련문서의 양식은 중앙관할당국이 정한다.</p>	<p>제25조 이 규정에 명시된 관련문서의 양식은 중앙관할당국이 정한다.</p>	<p>조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p>
<p>제23조 이 규정은 발표일자에 효력이 있다.</p>	<p>제26조 이 규정은 발표일자에 효력이 있다.</p> <p><u>2017년 12월 8일에 반포된 본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에 효력을 갖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의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이는 전문 개정이고, 발표일부터 효력이 있다. 입법형식에 따라 제2항이 삭제되었다.